

○ 제 목: 제57차 이사회
○ 일 시: 2019.12.12(목)18:30
○ 장 소: 호남정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제57차 이사회 회의록

■ 회의소집 통지일 : 2019. 11. 29(금)

■ 일 시 : 2019. 12. 12(목) 18:30~20:50

■ 장 소 :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 24(호남정)

■ 재적이사 총 7명 전원 참석, 감사 1명 참석

- 이 사 : 김○근, 김○진, 김○덕, 김○수, 민○기, 박○영, 이○연
- 감 사 : 강○표
- 배석인원 : 박○순, 김○동

■ 안 건

- 제1호 안건 :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
- 제2호 안건 :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제3호 안건 :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
- 제4호 안건 : 비슬노인복지센터 명칭변경의 건
- 보고사항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김○동 국장이 재적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

2. 개회

김○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8:30시 수경복지재단 제5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3. 대표이사 인사

김○근 대표이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라 바쁘신 일정에도 이사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다. 올해에도 한여름의 폭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사님들의 관심과 지지도 법인 및 산하시설들이 사업을 잘 수행해올 수 있었으며, 이번 이사회에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며 인사에 갈음하다.



4. 전차회의록 처리

- 김○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 김○동 국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제56차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다.
- 민○기 이사가 전차회의록 검토 후 이의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박○영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에 관해 이의 없는지를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

5. 부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

- 김○근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김○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린다.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1) 수경복지재단	49,463천원	49,863천원	400
2) 비슬노인복지센터	280,958천원	278,940천원	△2,018
3) 단비노인복지센터	283,626천원	284,441천원	815
4) 비슬원	807,764천원	807,764천원	0
5) 수경기억학교	424,697천원	424,697천원	0
6) 수경주간보호센터	784,619천원	658,941천원	△125,678

- 김○덕 이사가 다른 시설에 비해 수경주간보호센터의 예산변동이 많은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묻다.
- 김○동 국장이 이용료 수입이 다소 감소한 부분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이용료 수입감소에 비례하여 조정이 되었고, 세입에 편성되었던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으면서 세출영역에서 상환금 지출이 감소되어 전반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드린다.
- 민○기 이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본 바 법인 및 산하시설들의 추경예산편성이 2019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수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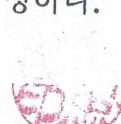
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뱉기로 가결처리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김○근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김○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법인 및 시설별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다.

구 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 감
1) 수경복지재단	49,863천원	43,832천원	△6,031
2) 비슬노인복지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78,940천원 -	362,333천원 559,719천원	83,393 559,719
3) 단비노인복지센터	284,441천원	100천원	△284,341
4) 비슬원	807,764천원	812,860천원	5,096
5) 수경기억학교	424,697천원	372,250천원	△52,447
6) 수경주간보호센터	658,941천원	867,602천원	208,661
7) 수경방문요양센터	53,941천원	140,433천원	86,492

- 김○근 대표이사가 대구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센터 구축계획에 의거 3인 시설로 운영되던 ‘재가노인복지센터’ 48개소를 2019년 말로 지정 취소하고, 2020년 1월부로 법인별로 5인 시설인 ‘재가노인돌봄센터’ 각 1개소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법인 산하의 2개 노인복지센터를 ‘비슬노인복지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김○수 이사가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2020년도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묻다.
- 김○근 대표이사가 공문으로 확정금액을 통보받지는 않았으나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급여가 결정되어 있고, 어르신 1인당 책정된 사업비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이○연 이사가 수경기억학교 예산이 이례적으로 52,44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다.
- 김○근 대표이사가 기억학교의 경우 대구시에서 기존의 총괄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2020년에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 시에서 지원받은 추가사업비와 차량구입을 위한 법인 전입금이 제외되어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설명하다.



- 김○동 국장이 수경주간보호센터와 수경방문요양센터는 현재 이용 어르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평균 이용인원으로 편성된 금년 예산에 비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단비노인복지센터는 2019년 말로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만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설명 드리다.
- 김○진 이사가 수경주간보호센터 등은 이용 어르신의 증가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서는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 2020년 보조금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박○영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

- 김○근 대표이사가 제3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상정하고 김○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법인 직제규정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수당 및 경조사 지원 관련사항 명시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다.
- 박○영 이사가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묻다.
- 김○근 대표이사가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에서 실시한 세미나를 통해 ‘직원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참여 및 인사위원장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 운영규정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이○연 이사가 직제규정을 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묻다.
- 김○근 대표이사가 2020년에 신규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법인 산하시설 및 직원의 규모가 증가하여, 직제와 정원 등을 명시한 직제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김○수 이사가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안)’의 내용이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존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민○기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제4호 의안 : 비슬노인복지센터 명칭변경의 건

- 김○근 대표이사가 제4호 의안인 ‘비슬노인복지센터 명칭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김○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대구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센터 구축계획’에 의거 기존의 ‘노인복지센터’가 ‘재가노인돌봄센터’로 변경되고, 기존 시설명칭인 ‘비슬’을 어르신들이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르신들이 부르기 쉽고 법인 및 산하시설과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수경재가 노인돌봄센터’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 드리다.
- 김○진 이사가 ‘비슬노인복지센터’라는 명칭이 법인 및 산하시설들의 명칭과 상이하였는데 다른 시설들과 일체감을 주고, 어르신들이 부르기에 편하며 ‘대구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센터 구축계획’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덕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보고사항

- 김○근 대표이사가 수행인력이 3명인 기존의 ‘재가노인지원센터’ 48개소를 수행인력 5명의 ‘재가노인돌봄센터’ 34개소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는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센터 구축계획’과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보고하다.
- 이○연 이사가 5인 시설로 운영하게 될 ‘수경재가노인돌봄센터’와 ‘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준비에는 차질이 없는지 묻다.
- 김○근 대표이사가 ‘수경재가노인돌봄센터’와 ‘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할 사무실 및 교육 공간 등을 시설기준에 맞게 준비하였으며,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의 수행인력도 채용을 완료하였음을 설명하다.

□ 기타 안건

- 김○근 대표이사가 기타 안건이 없는가를 묻고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다.

6. 폐회

- 김○수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 민○기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폐회에 이의 없음을 묻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50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과 같이 제57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대표이사 김○근



이사 김○진



이사 김○덕



이사 김○수



이사 민○기



이사 박○영



이사 이○연

